

[소프트웨어분쟁] 웹디자인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인 프리랜서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완성도 미흡으로 인수거절 통지 - 발주회사에서 채무불이행 계  
약해제 및 계약금 등 지급한 개발비 반환청구 - 일부 인정, 일부 불인정: 서울중앙지방  
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



### 개발결과물 검수 및 실패 통지

사. 이에 원고는 2017. 3. 20. 대리인을 통해 피고들에게 각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들이 제출한 용역결과물에 대해 검수를 한 결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로 판명되었고, 피고들이 향후에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을 해제하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이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통지는 2017. 3. 21.경 피고들에게 각 도달되었다.

## 추가 개발요구 사항 - 법원 수정계약의 내용으로 인정

③ 따라서, 이 사건 개발계획의 범위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최소 개발항목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 개발항목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개발일정표상에 기재된 전체의 기능들이 개발 및 구현되어 통상적인 의미의 상업적 서비스가 가능한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는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수정계약상 정하여진 피고 B의 업무범위 내지 개발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단순히 피고들이 주장하는 'Pivotal Tracker'에 입력된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Pivotal Tracker'에 입력된 부분은 이 사건 최소 개발항목과 대부분 일치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개발일정표 전체 항목(즉, 이 사건 최소 및 추가 개발항목)을 포함시키되, 보충적으로 이 사건 수정계약서(유침9.)의 해당 사이트에 연결(링크)되어 파일 형태로 첨부된 서비스기획서(이하 '이 사건 기획서'라 한다)의 내용도 참조하여야만 이러한 개발용역의 내용과 범위를 비로소 올바르게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추가 개발요구 사항과 개발실패 책임소재 - 법원 수정계약상 연장된 기한으로 해결, 최

### 종족으로 개발자의 귀책사유

⑧ 피고 B는 이 사건 수정계약의 이행이 그동안 지연된 이유에 대해, 원고가 지속적으로 기획과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피고들의 작업 일정도 2017. 3. 7.의 시한을 맞추지 못한 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획서도 피고들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수정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의 특성상 이러한 기획의 변경이나 수정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 B도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개발일정표에서도 디자인 결과물이 2017. 1. 21.까지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적용된 기능들을 완성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당사자들이 감안해 주기로 합의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사정들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향후 만일 개발 작업이 어떤 사유로든 지연되는 경우에는 2017. 3. 7. 계약 종료 전에 계약연장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 수정계약상의 개발계획을 완료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원고 측 지연사유는 이 사건 수정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없고, 또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도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

기술법무, 저작권, 영업비밀,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